

2023년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1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9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45건(안건번호 제2023-33563호~3398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33563호~33593호(순번 1번~31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33594호~33595호(순번 32번~33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33596호~33604호(순번 34번~4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33605호~33606호(순번 43번~44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제품키 등을 판매한 사안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형태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33607호(순번 45번)는 카페를 통해 영상저작물(방송)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8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9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

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3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임. 총 39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 및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임.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의 목록이 다량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

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순번 1번~31번 각 심의 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 내지 31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3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3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최신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C 위원: 이러한 게시물을 현재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하고 있는데, 만일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면 과연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이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임. 특정 불법복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 방조의 유죄로 판단될 수 있을지, 그리고 행정조치로서 제재할 정도일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본건과 같은 형태의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의 대상인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의 연결 링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 해당 사이트 및 대체사이트 자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신 대체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들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미 동일사례가 다수 누적된 상황임. 따라서 불법성이 소명된 사이트로의 링크게시물 중 시정권고로서 처리

할 수 있는 국내 OSP의 게시물에 대해 불법복제물 링크게시물의 논리를 적용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고 있음.

- D 위원: 특정 불법복제물을 지정하지 않은 단순링크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법과 불법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심의 위원회도 부결 경향임. 다만 이 경우 오로지 불법복제물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누적되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 C 위원: 순번 32번~33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특정 불법복제물에 대한 직접링크가 아니라,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 전체에 대한 단순링크의 경우에도 행정작용인 시정권고로서 제재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향후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A, B, D, E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3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번~4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0개 게시물임.

(순번 38번 및 4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 E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4번~4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번~44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제품키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4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제품키, 설치파일, 설치방법 등을 판매하고 있음. 해당 파일 등은 이메일 등의 1:1 연락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 게시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인증번호를 다수에게 전송한 사실을 채팅횟수 등의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이는 인증번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 본건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이 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사정 및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형태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 다만 이러한 판매글을 모두 불법복제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D 위원: 동의함. 만일 라이선스의 재판매라면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관련한 외국의 사례 또한 참고할 수 있음. 심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정통한 분의 의견을 묻고 심의기준을 정리하는 전체위원회를 열면 어떠할까 함.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셨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 위원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 ▷▷▷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심. 다만 실제 심의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불법복제물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판매가격, 정상적이지 않은 설치과정 안내 등의 정황증거를 근거로 시정조치 권고의 의견을 드리고 있음.
- D 위원: 순번 43번~44번은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형태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이와 더불어 위 심의안건 유형은 여러 차례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님들 간 논의가 오간 바 있음. 해당 심의사례들을 정리하여 추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 후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3번~4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카페에서 방송물을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45번은 각 게시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방송)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5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6번~4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8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46번~41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6번~41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3563호~33593호(순번 1번~3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3594호~33595호(순번 32번~3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3596호~33604호(순번 34번~4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3605호~33606호(순번 43번~4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3607호(순번 45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3608호~33980호(순번 46번~41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7.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